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 조광료 부과요율 심의〉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80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9
1. 조광료의 부과기준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수민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4. 10. 7.
3. 회부연월일 : 2024. 10.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권자를 말함)가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유전 후보지(일명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 조광료는 해저조광권자 납부의무와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조광료 부과요율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1항 및 제18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광료 부과요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1항제4호의2 신설 및 제18조제2항·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u><신설></u> 5. ~ 7. (생략) ② ~ ⑦ (생략) 제18조(조광료) ①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18조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u>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조광료) ① (현행과 같음) <u>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광료 부과요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 <u>③ 그 밖에</u> ----- -----.

해저조광권¹⁾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로서, 현행법 제18조²⁾는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조광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 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³⁾은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조광료 부과요율을 정하도록 하고, 조광료 부과요율 상한은 12%로 규정하였음.

[조광료의 부과기준(개정 전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 | |
|-----------------------|
| 1. 조광료 부과요율
가. 원 유 |
|-----------------------|

1)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해저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8조(조광료)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2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저조광권자가 그 생산한 해저광물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조광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는 원화 또는 미화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부 1년전에 조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광료를 부과할 판매가액의 범위 및 조광료의 현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생산량(천배럴/일)	부과요율(%)
2 이상 ~ 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6
10 이상 ~ 30 미만	9
30 이상	12

나. 천연가스

생산량(백만세제곱미터/일)	부과요율(%)
1 이상 ~ 3 미만	3
3 이상 ~ 6 미만	6
6 이상 ~ 11 미만	9
11 이상	12

2. 조광료 산정방법

조광료는 생산한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판매가액에 매분기별 1일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한 조광료 부과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한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해저광물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해저광구 및 해저조광권의 설정 등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었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⁴⁾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

4)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③ 법 제2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해양수산부

람,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⁵⁾.

최근 동해 8광구 및 6-1광구 북부지역에서 7개의 유망구조가 도출되어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및 가스의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탐사시추를 준비중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내외 민간투자를 유치할 계획임.

그런데 기존의 조광료 부과요율 등 조광제도는 소규모 유전·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것으로, 대규모 유전 및 가스전 개발⁶⁾에 적합하

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의3(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①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해저광구의 설정
 3. 제3조제4항에 따른 유망광구(有望鑛區)의 지정·공표 및 자금 지원
 4. 해저조광권의 설정 및 존속기간 연장 허가
 5.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6. 해저조광권의 취소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자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이 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동해 심해의 석유·가스 탐사자원량은 최소 35억 배럴, 최대 140억 배럴 부존 가능성 있음.

도록 하고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입 분배를 위해 조광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사업에는 국내사업자 외에도 국제석유개발업체 등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광료 부과요율이 적정수준으로 정해지지 않을 경우 개발이익의 해외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조광료의 부과요율은 해저광물자원의 개발 및 해저조광권자의 납부의무와 관련한 중요사항이므로,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개정안과 같이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 조광료 부과요율의 결정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조광료 부과요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하는 경우 정책결정의 신속성 및 탄력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조광료 부과와 관련하여서는 조광료 부과요율 외에도 조광료 산정방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으므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조광료의 부과요율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관련한 중요사항’으로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조광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으로 조광료 부과기준에 대한 시행령 개정 시 관계부처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입법예고를 통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도 반영 가능하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참고로, 2024년 12월 31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⁷⁾되어 기존 원유 또는 천연가스 생산량에 따라 부과하던 조광료 산정방식을 매출액과 투자비용의 비율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고, 조광료 부과요율 상한을 기존 12%에서 33%로 상향하였으며, 고유가 시기⁸⁾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3%의 추가 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광료 부과기준이 개편되었음.

7) [시행 2024. 12. 31.] [대통령령 제35155호, 2024. 12. 31., 일부개정], 개정된 조광료의 부과기준은 참고자료 1 참조

8) 당해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미화 85달러 이상이고, 원유·천연가스 판매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문 의 처
02)6788-5464

※ 참고자료

1. 조광료의 부과기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31.>)

1. “조광료”는 부과대상연도의 매출액에 조광료 부과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2. “매출액”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조광구에서 생산한 원유·천연가스 등을 판매한 금액으로서 원유·천연가스 등의 판매량에 제8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판매가격을 곱한 값을 말한다.
3. “조광료 부과요율”은 아래 표에 따르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비율계수	부과요율(%)
1.25 미만	1
1.25 이상 ~ 3 미만	$[18.28 \times (\text{비율계수} - 1.25)] + 1$
3 이상	33

4. “비율계수”란 생산개시연도부터 부과대상연도까지의 누적 순매출액(누적 총매출액에서 누적 조광료를 차감한 값)을 탐사권설정연도부터 부과대상연도까지의 누적 투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text{비율계수}_N = \frac{\sum_{t_2 = \text{생산개시연도}}^N (\text{매출액}_{t_2} - \text{조광료}_{t_2})}{\sum_{t_1 = \text{탐사권설정연도}}^N \text{투자비용}_{t_1}}$$

※ N은 부과대상연도를 말한다.

5. 투자비용은 다음 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가. 자본화비용: 해저광물 탐사·채취를 위한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비용
- 나. 운영비용: 해저광물의 탐사·채취 과정에서 직·간접으로 발생한 총비용(감가상각비 및 모든 종류의 세금은 제외한다)
- 다. 원상회복비용: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의 수거 및 그 밖에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총비용(제7조의2제1호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충당금을 포함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도 불구하고 해저조광권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추가 조광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저조광권자가 협의하여 그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부과대상연도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평균 판매가격이 직전 5개년도 평균 판매가격 대비 20퍼센트 이상 높을 것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국제원유거래가격 기준에 따른 가격이 배럴당 미화 85달러 이상일 것

7. 제6호에 따른 추가 조광료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부과대상연도의 평균 판매가격} - (\text{부과대상연도의 직전 5개년도 평균 판매가격} \times 1.2)] \times \text{판매량} \times 33\%$$